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18
----------	-------

발의연월일 : 2023. 12. 29.

발 의 자 : 안병길 · 김학용 · 김정재
권명호 · 정동만 · 전봉민
윤영석 · 박대수 · 이현승
구자근 · 류성걸 · 조은희
박대출 · 강민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에도,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시설 이용 노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 노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시설 이용 노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 노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第51條(老人福祉名譽指導員) ①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u>福祉實施機關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의 入所老人의 보호를 위하여 老人福祉名譽指導員을 둘 수 있다.</u> <u>② 老人福祉名譽指導員의 위촉 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u>	<u>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u> <u>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 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
--	--